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7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민병덕·박지원·신영대

김 윤・김남희・김병기

황명선 · 최기상 · 장철민

이해민 • 김재원 • 한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불법사금융' 이라는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며 활동하는 미등록대부업자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음.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미등록대부업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며, 등록대부업자라도「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

법 영업에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 함. 이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등).

법률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을 "경우와 제3항을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 초과 지급된"을 "채무자가 지급한모든"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와의 약정의 효력) ①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 소비대차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무효인 이자약정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대부계약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 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 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 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 채무자가 지급한 모든-----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 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 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와의 약정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 의 효력) ① 미등록대부업자와 의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약정은 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 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무효로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 채무자에게 받은 이자를 채무 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무 다.

제19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생략)
- 3. <u>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u>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 자를 받은 자
- 4. ~ 10. (생략)
- ③ (생략)

<u>효인</u>	이자약정	에	따라	미	등	<u>록</u>
대부약	법자에게	0];	자를	지	급	<u>한</u>
<u>경우</u>	채무자는	ユ	반환	을	청-	7
<u>할 수</u>	있다.					

제1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u>.</u>
1.·2. (현행과 같음)
3. <u>제8조</u>

- 4. ~ 10.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